

21. 96年 새해 달라지는 制度

資料提供：每日經濟新聞

勤所稅 공제한도 690만원서 800만원으로

금융소득 4천만원 넘을땐 종합과세

- 도심 통과때 혼잡통행료 물어야
- 국민학교 명칭 초등학교로 변경
- 국군사병 중·석식 「1식4찬」으로
- 31만 2천원이면 이동전화 가입
- 800cc이하 경차 등록세율 2%로
- 외국국적 교포도 국내토지 보유
- 서울·인천 대기오염경보제 실시
- 페스티로폼 분리수거품목 지정
- 실직근로자 7월부터 실업급여
- 소득세 최고세율 45%서 40%로
- 해외이주비 한도 40만弗로 확대
- 65세이상 노인에 연중 醫險적용
- 주민등·초본 제3자까지 발급
- 종합토지세 과표 공시지가 전환
- 기업공모比 발행주식수의 30%
- 직불카드制 2월부터 전면시행
- 주가지수 선물시장 5월 문열어
- 여권신청때 주민등본제출 폐지

□주택건설

△주택할부금융제도 시행=전용면적 1백35m² 이하인 완성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할부로 상환.

△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 강화=아파트 착공시까지만 보증하는 주택착공보증제도 대신에 아파트 준공시까지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의무화.

△건축허가절차 간소화=건축주는 실시설계도서없이 기본설계도서 제출만으로 가능하고 관계공무원은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법령만을 검토.

△다중이용시설 공사감리강화=연면적 5천m²이상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는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.

△공사감리자 권한 강화=건축물 공사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권 등의 명령권 부여.

△해외교포의 국내토지 계속 보유=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해야 했으나 국내토지의 계속 보유가 가능.

□세금

△소득세율 인하=최고세율이 45%에서 40%로 낮아지고 세율구조도 5~45%의 6단계에서 10~40%의 4단계로 조정.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금액이 3백1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, 공제한도는 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상향조정.

인적공제는 기초공제, 배우자공제, 부양가족공제를 각 1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에 유치원생(1인당 70만원)과 대학생(1인당 2백30만원)을 추가.

△법인세율 인하=과표 1억원이하는 16%, 1억원 초과는 28%로 각각 2%포인트씩 인하.

△집대비 한도확대=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한도의 기초금액을 6백만원(중소기업 1천8백만원)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. 또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한도도 종전 0.15%(중소기업 0.3%)에서 1백억원이하 0.3%, 1천억원 이하 0.2%, 1천억원 초과 0.1%로 조정.

△자본재산업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=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중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3년이상 7년미만은 급여액의 10%를 공제하고 7년이상 12년미만은 급여액의 20%, 12년이상은 급여액의 30%를 공제.

△양도소득세율 인하=현재 40~60%의 5단계에서 30~50%의 3단계로 하향조정. 또 양도소득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희토지도공제대상에 포함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은 3년거주, 5년 보유에서 3년보유로 완화.

△상속·증여세율 인하=10~40%의 4단계 누진세율로 종전보다 단순화. 배우자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과 결혼연수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상향조정.

□ 종합과세

- △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=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, 누진세율로 종합과세. 4천만원까지는 15%의 분리과세.
- △종합과세 세율=과세표준이 1천만원까지는 10%,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20%,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은 30%, 6천만원 초과는 40%
- △과세대상=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하며 개인간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,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 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, 국외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.
- △과세대상 적용 예외=주식의 양도차익, 채권의 매매차익, 5년 만기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.
- △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금융소득=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 및 저축기간이 5년이상인 정기예금·적금·부금의 이자소득은 30% 분리과세 가능하며 장기채권의 경우 10년이상이면 세율이 25%로 낮아짐.
- △장기채권의 종류=신탁기간이 5년이상인 개발신탁수익증권과 신탁기간이 5년이상이고 신탁재산의 90% 이상을 5년이상 공·사채로 편입하는 증권투자 신탁수익증권도 장기채권 범위에 포함됨.
- △가계생활자금저축 신설=1가구 1통장에 한해서 10%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상품신설. 불입한도는 원금잔액기준 1천2백만원까지이며 신용카드나 가계수표 결제가 가능한 계좌이어야 함.

□ 교통

- △혼잡통행료 부과=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 이곳을 통과하는 1~2인승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, 서울시는 하반기 남산 1, 3호터널에서 시범실시할 계획.
- △주차장 설치 상한제=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적용으로 자동차를 시내로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.
- △시내버스요금 체계개선=토큰 및 현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시내버스요금 체계에 요금카드제를 추가. 서울에서는 7월부터 전면 실시, 하반기에 주요 도시별로 확대 운영.

△ 시내버스차량 고출력화 = 승차감을 높이고 매연방지를 위해 신규차량부터 톤당 16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의무화.

△ 고급형 우등고속버스 운행(9월1일) = 운행거리 2km 이상인 노선에 화장실 및 세면대가 설치된 우등고속버스를 운행.

△ 모범택시 무선호출망 구성운영 = 모범택시가 대기하거나 배회 영업하는 상태에서 호출 및 배회영업이 가능토록 무선호출망 구성.

□ 정보통신세

△ 정보화 촉진기본법 시행 =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 운영되며 초고속망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허용.

△ 시외전화사업 복수경쟁화시대 = 데이콤이 식별번호 082로 시외전화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시외전화사업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수경쟁체제로 전환.

△ 이동전화 경쟁(4월1일) =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, 한국이동통신과 경쟁.

△ 이동전화 설비비 및 요금체계 조정(2월1일) =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내던 설비비 65만 원을 내지 않는 대신 가입보증금 20만 원을 낸다.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설비비는 2~3월에 반환된다. 이동전화 가입비용은 70만1천원에서 31만2천원으로 인하. 통화료도 월 기본료가 2만7천원에서 2만2천원으로 내리고 10초당 통화료는 25원에서 32원으로 인상.

△ 컴퓨터 발신형 우편서비스 개시(12월1일) = 우편물의 내용과 수취인 명단을 우체국 전산망을 통하거나 디스켓에 담아 우체국에 접수시키면 내용물을 인쇄, 송달해주는 컴퓨터 발신형 전산우편 시험서비스의 개시.

□ 자동차

△ 자동차번호판 변경 = 자동차번호판의 차종기호가 한자릿수에서 두자릿수로 늘어나고 일련번호를 음각으로 표시.

△ 정기점검 의무제 폐지(10월1일) = 노후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수검의무를 폐지.

△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화(10월1일) = 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대행을 의무화. 단 자동차 구입자가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.

△말소등록 위반시 처벌완화(10월1일)=말소등록 신청위반시 처벌을 벌금 1백만원이하에서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완화.

△자동차 무단방치행위 처벌 강화(10월1일)=자동차 무단방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.

△중고자동차 경매제도 도입(10월1일)=중고자동차 경매제도가 없었으나 새로 경매제도가 신설됨.

△경자동차 세율인하 및 세제지원=8백cc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을 5%에서 2%로 인하하고 면허세를 50% 인하. 1가구 2차량 초과대상에서도 제외. 고속도로 통행료는 3월 1일부터 50% 할인, 책임보험료도 8월1일부터 30% 인하.

□보건복지

△저소득층 생계보호=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, 시설보호자는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각각 지원액이 인상. 소년소녀가장가구 지원금도 월 11만원에서 14만1천원으로 확대.

△노인복지확대=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연중 실시되며 버스승차권 대신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.

△장애인 복지확대=2백10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 연중 실시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.

△국민건강증진법=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·금연구역 구분지정의 의무화. 위반시에는 건물주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.

△의료보험급여확대=의료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적용기간이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(CT)에 대해 보험이 적용.

□교육

△국민학교 명칭변경=2월까지 전국 5천7백72개 국민학교 간판이 초등학교로 바뀌고 학교 직인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.

△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운영=만5세 아동 가운데 학부모가 희망하고 학급당 인원이 39

명 이하일 경우 생년월일 순으로 조기입학이 가능.

△조기진급 및 조기졸업=초·중·고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국교에서 1회,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 1회등 총 2회까지 월반 또는 조기 졸업 가능.

△교육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지급=초·중등교원과 교육전문공무원중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대상자의 10%이내에서 월봉급액의 50~1백%까지 연 1회 성과급 지급.

△담임수당 및 교직수당 인상=초·중등 담임교사에게 월 3만원의 담임수당 지급. 교직수당은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.

△영재교육센터 설립(상반기중)=교육개발원내에 영재들의 창의력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.

□환경

△소음도 표시제의 부착권고=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굴착기 향타기 등 8종의 기계에 소음정도 표시를 부착하도록 권고.

△폐기물 센서스 실시=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 조사를 위해 전국 45개 권역에서 표본 1백~2백50개소를 선정, 연 3회 조사. 사업장 폐기물은 20인이상 사업장 1천개소 조사.

△페스티로폼 분리수거대상 품목으로 지정(3월1일)=페스티로폼을 유리병과 같이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고 市급이상 지역에서 우선 시행, 97년 1월 이후에는 郡지역으로 확대.

△대기오염경보제 실시(7월1일)=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대기오염 경보제 실시.

△소각시설 성능기준 강화=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 일정수준이상의 소각시설에서만 소각 가능토록 하며 노천소각을 금지

△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 시행=TV 냉장고 세탁기 등 6개 품목 제조·수입업체는 완충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 또는 재활용해 폐기물 발생을 감량.

△청정연료사용시설확대(9월1일)=대도시지역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 및 경유의 사용대상 시설 확대, 수도권 21평이상 아파트 부산 대구의 25평이상 아파트 및 0.2톤이상 보일러

□노동

- △유료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=유료직업소개사업의 유효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허용.
- △실업급여 지급개시(7월1일)=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시 실직전 임금의 50%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~2백10일간 지급
- △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제도 시행(7월1일)=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사업주에 대해 해당 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 표시 및 경고표지 부착, 근로자 교육 등의 의무화.
- △산재보험적용확대=5인 이상 사업중 부동산임대사업 및 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.
- △중소기업근로자의 의료비대출=중소제조업체 1년이상 재직자로 전년도 월평균 임금이 8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대출.
- △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일부지원=고용보험 미적용 중소기업장(70인미만)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.

□과학기술

- △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과기처 출연연구소에 전면확대실시=연구실명제인 프로젝트 베이스시스템 도입. 연구수주는 경쟁원칙에 따르며 연구사업별로 참여연구원 투입비용 사업성과 및 생산성을 반영해 계상.
- △고등과학원 개설(7월1일)=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구로 수학 물리의 이론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화학 생물분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석좌교수 3명을 포함해 30여명의 연구진으로 출범.
- △테크노경영대학원 개설(3월2일)=한국과학기술원(KAIST) 직속기구로 서울캠퍼스에 설립되며 석사과정으로 경영학과 과학기술에 폭 넓은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.
- △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 절차간소화=전문연구요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가 폐지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.

□국방

- △사병 급식개선=쌀은 전량 일반미로, 부식도 중·석식은 1식 4찬으로 한다. 사병 칫솔을 1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투화도 방수처리된 부드러운 가죽으로 개선.
- △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수준 상향조정=기본 연금을 매달 35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매달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.
- △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확대(4월1일)=고엽제 후유증 장애정도에 따라 매달 20만~40만원의 수당을 지급. 자녀의 중·고·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.
- △해외독립유공자 및 유족정착지원=영주 귀국하는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정착 지원금 3천만원 지급.
- △인접 병무청서 징병검사 가능=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돼 있는 징병검사를 교통이 불편할 경우 인접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허용.
- △징병검사 통지서 우편송부제도=징병검사 통지서를 읍·면·동직원이 거주지를 방문, 교부하던 방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.
- △징병검사 결과 공개=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해온 징병검사 현황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개하며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 제공.

□국민생활

- △주민등록 온라인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대상 확대=본인 또는 가구원 직계존비속 가족 등에게만 제한돼 있는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대상을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확대 발급.
- △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=읍·면·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서를 접수해야 했으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.
- △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(토지분)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=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결정.
- △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=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(법인세액, 농지세액)의 7.5%에서 10%로 상향조정.
- △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=상속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기한을 상속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.

△어민 후계자 세제지원=어촌계가 어민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. 어민 후계자 및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0%를 경감.

□증권

△기업공개 공모비율 완화=기업 공모비율을 발행 주식수의 30%나 최소 10%이상이면서 1천만주 이상으로 완화.

△상장법인 자사주취득한도 확대=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5%에서 10%까지 확대. 취득한도 초과분의 처분기간도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연장.

△대량주식취득 보고의무=은행 투신 등의 신탁계정에서 특정주식을 5%이상 취득할때 보고의무 부과.

△대량매매제도 개선=매매수량을 5만주로 낮추고 금액요건(10억원)을 신설.

△기업회계기준 변경(4월1일)=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기준을 종전의 취득원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.

△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(5월3일)=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시장 개설. 거래단위는 KOSPI에 50만원을 곱한 것이며 가격제한 폭은 상하 5%.

△신구주 통합(10월1일)=상법개정으로 신주에 대해서도 배당기산일을 소급적용할 수 있게 돼 신구주의 구분없이 한 종목으로 취급가능.

△시간외 매매제도 도입(10월1일)=매매시간종료후 종가로 30분동안 매매. 매매종료후 당일 고가와 저가범위내에서 신고대량매매 허용.

△주가지수 옵션시험시장 개설(12월1일)=97년 3월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을 목표로 시험시장 개설.

△해외증권투자 자유화(96년중)=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10억원, 개인은 5억원으로 제한된 투자한도를 폐지.

□금융

△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 자격제한기간 설정=해임권고일부터 7년, 업무집행정지일로부터 5년, 문책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.

△점포설립, 운영의 자율화 폭 확대=신설점포 표준정수가 시중은행은 15개, 지방은행은 10개로 확대.

△직불카드 시행(2월1일)=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.

△은행 경영평가제도 개편=국제결제은행(BIS)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일부 경영지도비율을 경영평가지표로 신규도입하고 절대평가방식을 일부 도입.

△인가업무 관련 신청서류 대폭 폐지=각종 신청서류 2백 47개중 91개 폐지해 업무부담 경감.

△대기업 재무제표 변경=30대그룹의 계열기업군단위 재무제표를 현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합산재무제표로 대체.

△10대 계열기업군의 폐기물 처리시설용 부동산취득시 자구의무 면제

△10대 계열기업군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앞 사후신고 폐지

△투자금융사가 종합금융사로 전환(7월1일)

△할부금융사 출범=30여개 할부금융사가 정식으로 영업개시.

△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 발효(7월1일)=투·종금, 信金의 출연금을 예금액의 0.15%이내로 상향조정하고 信金의 경영실적을 기금에서 공시.

△신협, 새마을금고 공제차의 과세전환=저축성 공제상품은 공제차익중 15% 원천과세하고 보장성 상품은 연 50만원까지 보험료공제.

□보험

△생명보험 약관해석 통일=피보험자가 이민가는 경우라도 계약자가 계속 계약유지를 원하면 피보험자가자격 보장.

△일시납 보험료 납입한도조정=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일시납 보험료를 하향조정해 제한.

△암보험관련 계약개선(4월1일)=암보험계약 피보험자가 계약일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무효로 간주하던 것을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로 조정.

△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(8월 1일)=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사망 부상 후유장애별로 1천5백만원 6백만원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, 1천만원,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.

- △여신거래 기본약관개선=회사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조치시 기한이익 상실 3일전까지 통지의무 부과, 포괄근저당 제도 폐지하고 한정 근저당제도만 유지.
- △국공채창구판매(4월1일)=보험사 영업점에서도 국공채매입이 가능.
- △보험차익 과세=보험차익 과세대상을 3년미만에서 5년미만 유지계약으로 조정.
- △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(4월1일)=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 가능.

□외환제도

- △외환거래 결제방법 변경(2월1일)=원화와 외화간 거래에 따른 현물환 결제방법이 익일 결제에서 제2 영업일을 결제방식으로 변경.
- △원/엔시장 개설(10월1일)=그동안 외국환은행간 원/달러시장만 운영돼 왔으나 원/엔 현물환 및 선물환 시장을 개설 운영.
- △외국인 투자제한 완화=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소매업종의 경우 종전의 점포수 및 매장면적 등 제한을 폐지.
- △외국인 투자제한 업종개방=부분개방 또는 미개방되어 있는 1백95개 업종중 88개 업종이 신규 개방되거나 개방 확대.
- △해외이주비 한도확대(96년중)=가구주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, 가구원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해외이주비 확대.
- △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(96년중)=수출실적의 10%에서 15%로 확대.
- △해외예금 자유화(96년중)=1억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해외예금 한도를 폐지.
- △거주자의 해외신용 공여한도 확대(96년중)=기관투자자의 경우 1천만달러인 한도를 폐지하고 일반법인은 한도를 현행 30만달러에서 확대.

□해외여행

- △여권발급 신청서류 간소화=그동안 주소지관할 시·도가 아닌 他시·도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할때 신원조사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사항 전산조회가 가능해져 등본제출이 필요없게 된다. 따라서 사진 두장과 신청서 제출

만으로 간편하게 여권발급을 신청.

△군복무필자의 국외여행 귀국 신고제도 폐지=국외여행 신고의무자 귀국시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해온 것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심사시제출하는 입국신고서로 대체.

□무역·통상

△수입자유화 품목 확대=명태 포도 사과주스에 대해, 7월1일부터는 콩치 버터 인조꿀등 28개 품목

△수입선 다변화 품목 축소=현행 1백87개 품목을 1백62개 품목으로 축소.

△중고제품 수입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=기업의 시설투자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특정 품목을 제외한 중고 제품의 수입을 전면 자유화.

△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업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=관세청에서 담당하던 덤핑수입 및 보조금을 지급한 물품의 수입사실에 대한 조사기능을 무역위원회에서 담당.

△수출 승인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(하반기중)=수출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국방 환경 보건위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게 됨.

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